

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9. 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31일 · 김성은 의원 외 6인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3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7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9. 6) 상정 · 수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김 성 은 의원)

가. 제정이유

○차상위계층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 거주세대,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함

○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함

○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김성은의원외 6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